

1. 개정이유

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관광진흥법 제34조의2」 개정(법률 제17704호, 2020. 12.22.공포, 2021.6.23. 시행)됨에 따라,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공개의 대상, 방법 등을 신설하고,

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보험가입 증명 첨부서류 관련 보험 가입 종류를 변경하여 원활한 보험가입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항목 신설
(안 제42조의2)

- 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(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) 또는 신고(변경 신고 포함)에 관한 정보
-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안전·위생관련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
-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
-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에 관한 정보
- 자체 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정보

나.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시설 내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(안 제71조 제5호, 별표24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2(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정보 공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(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) 또는 신고(변경 신고 포함)에 관한 정보
2.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안전·위생관련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
3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
4.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에 관한 정보
5. 자체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정보

제71조제1항제5호 중 “보증보험”을 “보험 또는 공제”로 한다.

별표 24 제3호의 등록요건란다목 중 “보증보험”을 “보험 또는 공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2조의2(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 템을 통한 안전정보 공개)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 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공개할 수 있다.</u> <u>1. 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 의 허가(변경 허가 및 변경신 고 포함) 또는 신고(변경 신고 포함)에 관한 정보</u> <u>2.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안전·위생관련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 보</u> <u>3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 성검사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 인하는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</u> <u>4.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에 관한 정보</u> <u>5. 자체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</u>

	<u>한 정보</u>
제71조(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) ①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·검사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시설·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71조(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<u>보증보험</u>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	5. ----- <u>보</u> <u>험 또는 공제</u> -----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